

韓國會計監查制度의 改善方向

姜 永 福

目 次

1. 序 言
2. 監查役에 依한 會計監查의 現況
3. 現行監查役制度의 改善
4. 外部監查制度의 採擇
5. 結 言

1. 序 言

前後二次에 걸친 資產 및 財產再評價法에 依據한 企業資產의 再評價實施를 비롯하여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規則에 準據한 財務諸表의 作成은 非現實的이고도 無秩序했던 우리나라 企業經營計算에 對하여 어느 程度 真實性과 安全性을 이룩할 터전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企業經營面에 從事하는 분들에게는 會計處理上 뚜렷한 하나의 指針을 提示하게 되었으나 企業의 會計監查面은 尚今도 舊態依然한 消極的이며 非合理的인 監查制度를 脫皮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獨自의인 會計監查實施準則마저 제대로 公表되지 못하는 形便으로 能히 斟酌할 수 있으며 20餘年前에 制定된 日本商法上의 規定에 따른 有名無實한 企業의 監查役制度는 오히려 經營擔當者의 不當한 經理處理를 合理化시키는 役割조차 不無한 實情이었으며 63年度부터 實施된 改正商法에서도 그다지 改善된 點이 없음은 寒心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早速한 時日內에 現行監查役制度의 改善은 勿論 監查實施準則을 制定하고 公認會計理士制度의 發展으로 歐美先進國의 發達된 外部監查制度와 對等한 外部監查制度를 實施하므로써 信賴性 있는 健全한 會計監查制度를 確立하고 나아가서 國家產業發展의 土臺가 되는 經濟秩序의 維持에 寄與하여야 될 것이다.

2. 監查役에 依한 會計監查의 現況

먼저 監查役의 性格變化를 보면 株式會社가 發展하여 大規模化함에 따라 企業資本이 大衆投資家에 依하여 調達될 때 까지는 監查役의 役割은 從業員에 依한 金錢使用과 財產隱匿 等의 不正을 揭發하므로서 財產所有者的 利益을 保護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監查役의 職務는 財產所有者와 同一하였다. 그러나 資本主義의 發展에 따라 資本集中의 傾向을 이루었으며 大資本集中의 手段으로 有限責任인 株式會社制度가 發達케 되자 그 出資者인 株主에 依하여 財產狀態를 監視監督한다는 것은 不可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矛盾을 除去하기 為하여 監視 監督에 從事하는 것을 職能으로 한 監查役制度가 發生케 된 것이다.

그리하여 株式會社에 있어서의 株式所有者 및 債權者는 이미 企業의 實態보다도 自己가 投資한 株式 및 債權이 確實히 保全되고 利潤乃至 利子가 제대로 發生하며 나아가서 萬一의 境遇에 株式의 賣却 및 債權의 返還을 通하여 確實하고도 有利하게 投下한 資金을 回收할 수 있는가 하는 點에 重大한 關心을 기우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株式會社가 所要資金을 容易하게 調達하기 為하여서는 먼저 會社의 財務가 確實하여 公表되는 財務諸表가 所謂 會計處理의 任意性과 慎意性을 除去한 真實한 財政狀態의 表示로 信賴性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會社內部의 財政狀態에 關하여 真實性을 確保하고 企業의 真實한 營業狀態가 財務諸表에 表示되어야 한다는 理由로 株式會社의 發生과 더부터 株式會社는 株主의 意思決定의 機關으로서의 株主總會를 비롯하여 會社의 業務執行機關으로서의 取締役 및 會社의 經營活動全般을 對象으로 하여 監督하는 監查役의 3個機關으로 構成케 되

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株式會社에서는 前記한 바 三權分立式으로 되어 있지 못하고 現在의 監査役의 地位는 漸次 後退하고 있는 것이다. 諸外國의 商法上 監査役의 權限이 萎縮되어 外部監査制度를 指向하는 世代의 趨勢의 例外가 될 수 없음에서인지 弱體化되고 多樣化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類型을 散見할 수 있다.

(ㄱ) 少數의 大株主가 會社의 經營을 自由로 支配할 目的으로 選任하는 監査役 即 企業支配型.

(ㄴ) 金融資本家가 自己의 投資金을 保全할 目的으로 派遣하는 監査役 即 金融支配型.

(ㄷ) 會社가 古參從業員의 配置에 힘이드려 暫定的으로 生活費를 援助하는 意味에서 選任하는 監査役 即 ロボット型.

(ㄹ) 經營의 經濟性을 發揮하기 為하여 監査의 強力化 機能化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選任하는 監査役 即 正規型 等이다.

以上과 같이 우리나라 監査役에 關한 여타型이 發生케 된 것은 一般大衆이 株式會社의 監査役制度에 對한 無關心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元來 企業의 監査役 制度는 但只 小數의 資本家支配(minority control)나 金融機關에 依한 投資保全의 監査役도 아니며 資本과 經營의 分離(division between capital and management)에 依한 企業의 經濟性을 發揮하는 目的의 手段으로서의 監査役 制度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現代의 企業이 要求하는 監査役制度下에서 活動하는 監査役은 企業經營의 監査에 對하여 安全한 專門的 監査人(professional auditor)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서 비로서 監査役監査에 依하여 一般投資家の 投資의 安全性이 期待됨과 同時に 經營自體의 經濟性을 發揮시킬 수 있는 것이다.

現行商法인 改正商法上 監査役은 會社의 會計監査上 常設의 機關으로 되고 있으며 合議體가 아닌 單獨業務處理가 可能한바 다음과 같은 職務權限을 지니고 있다.

① 언제든지 會社의 業務 및 財產狀況을 調查할 수 있고 理事에 對하여 營業에 關한 報告를 要求할 수 있다(商法 第 142 條).

② 監査役은 理事의 株主總會에 提出할 會計에 關한 書類를 調査하여 株主總會에 그 意見을 報告하여야 한다(商法 413 條).

以上 會計監査가 現行商法上 監査役의 重要한 職務權限이며 日本商法의 改正時 削除된 業務監査를 우리나라에서도 받았으나 正確한 會計監査의 實施上 起起될 矛盾을 除去하고자 監査役의 權限은 職務의 遂行을 為하여 特히 必要할 때에는 業務監査面에 까지 미치게 하고 있다(商法 第 412 條 第 2 項) 如斯한 職務權限은 會計監査上 當然히 取할 權限이며 이 點에 있어 監査役監査나 外部監査도 監査理論으로 보아 같은 것이다. 元來 會計監査는 會社가 實行한 會計를 吻昧하고 批判하는 事務를 對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監査의 對象인 會社가 實行한 會計帳簿 및 書類의 閱覽은勿論 理事에 對하여 會計上の 報告를 求할 수 있다.

이 밖에도 監査役에 賦與된 權限으로는 取締役 退任에 依한 人數不足時 裁判所에 對한 一時의in 取締役職務代行者請求權(386 條 2 項)이 있다.

監査役에는 上述한 바와 같은 職務權限이 賦與된 反面 會社 및 第三者에 對한 責任을 지고 있다. 會社에 對한 責任으로는 監査가 그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會社에 對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商法 414 條). 그 責任은 總株主의 同意없이는 免할 수 없다(商法 第 400 條). 이것 은 株主의 代表訴訟까지 認定하고 있는 것으로

① 即 發行株式의 5% 以上을 保有하는 株主는 會社에 對하여 書面으로 監査役의 責任을 追窮하는 訴訟提起를 請求할 수 있다.

② 會社가 그 請求가 있는날 부터 30日 以內에 訴訟을 提起치 않을 때에는 前項의 株主는 會社를 為하여 訴訟提起를 할 수 있다.

③ 그리하여 前項에 定한 期間의 經過에 依하여 會社에 回復되지 못할 損害가 發生될 憂慮가 있는 境遇에는 前項의 規定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第1項의 株主는 即時 前項의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商法 第 403 條).

第三者에 對한 監査의 責任으로는 大體로 理事에 있어서의 그과 같은 것으로 監査가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그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第三者에 對하여 損害를賠償할 責任이 있다(商法 第414條). 監查가 會社 또는 第三者에 對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는 때에는 監查 및 理事는 連帶하여 賠償의 責任이 있다(商法 第414條)

우리나라 商法에 規定된 以上과 같은 監查役의 職務權限과 責任은 大陸法案 特히 獨逸의 商法을 母法으로 하여 獨逸商法上의 經營監查(chetriebsprüfung)와 經濟監查(wirtschaftsprüfung)의 職務를 遂行하는 것으로 監查役監查는 單純한 會計監查뿐 만이 아니라 經營活動全般에 걸쳐 活動의 正否 및 適否를 吟味하고 批判하여 企業의 經營管理에 寄與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如斯한 強力한 權限이 賦與되었음에도 不拘하고 監查役監查가 低謙한 理由를 살펴 보면 監查役이 業務執行面에서 離脫되고 있을 뿐 아니라 無能力한 監查役을 株主總會에서 選任시키고 있으며 監查役에 關한 法的規定의 不備等을 列舉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具體的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無能力한 監查役의 就任

監查役은 會社의 會計監查라는 重要한 職務를 擔當하여 그것을 完全히 遂行하여야 될 會社의 機關임에도 不拘하고 監查에 臨하는 監查役의 大部分은 그 職責을 完遂하는데 足한 知識 經驗能力 等이 없는 者가 選任되고 있으므로 會社가 行한 會計處理가 邪正하고도 妥當한 것인가의 與否를 判斷하고 識別할 수 없으며 自然的으로 監查의 結果에 對하여 아무런 信賴性을 지니지 못하는 것이다.

(1) 現行商法上 監查役에 對한 資格에 別다른 規定이 없다. 다시 말하면 適格條件이 없으므로 會計監查의 對象이 되는 會計處理에 對하여 全然 知識과 經驗이 없는 者도 직지 않다. 따라서理事가 提出한 財務書類 即 貸借對照表 財產目錄 損益計算書 利益處分案 等을 閱覽하여도 그 正否 및 適否에 關한 判斷을 내릴 수 없어 그대로 보아넘기는 수가 많다. 要는 商法上 監查役에 對한 아무런 適格條件이 없으므로 簿記會計의 初步的 知識 마저 具備치 않고도 監查役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商法規定自體가 有名

無失한 것으로 看做될 수 있다.

(2) 監查役이 會計監查의 重要性에 關하여 아무런 理解가 없으며 또한 自覺하지도 않아 말하자면 로보트化되고 있는 것이다.

監查役은 會社의 會計를 嚴密하고도 明確하게 監查하는 것이므로 그 選任 또한 嚴正하여야 된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多少의例外는 있다 하더라도前述한바와 같이一般的으로 I. 理事會에서는 그들과 마음이 맞는 人物을 미리 選定했다가 그를 株主總會에서 選任하게 된다, II. 古參從業員에 對한 生活費補助의 뜻에서 會計監查에 何等의 經驗이 없는者를 選任한다. III. 年老한理事의 配置에 窮한 나머지 優待의 뜻으로 그 자리에 앉힌다. IV. 會社宣傳의 目的으로 社會의 著名人士에 監查役을 依賴한다. V. 勢力있는理事의 緣故者를 選任한다. VI. 商法上의 規定으로 監查役을 두어야 하므로 하는 수 없이 單純한 商法上의 措置로 그 人物의 如何를 不問에 부치고 選任한다. 따라서 그들의 監查役으로서 機能을 發揮할 수 없도록 選任初부터 制約을 받게 되므로 自然히 監查役의 弱體化를 招來하고有名無實하다는 一般의 批判을 免할 수 없는 것이다.

2) 株主側의 無關心한 監查役의 選任

會社의 理事會가 株主總會에 推薦하여 選任하고자 하는 監查役이 監查役으로서 참다운 適格條件를 具備하고 있는가의 與否에 對하여一般的으로 株主總會에서의 株主로서 無關心하다. 따라서 株主總會에 있어서의 監查報告는 全然等閑視하는 境遇가 많다. 한通의 形式的報告에 그치고 있는 것이 大多數會社의 現狀이라고 할 수 있다.

3) 監查役에 對한 商法規定의 不備

(1) 現行商法에 있어서의 監查役의 選任은理事와 같이 株主總會에서 行한다(商法 409) 그런데 그 選任方法에 있어서는 少數株主에 依한理事와 監查의 選任權을 擴大시키므로써 大株主에 依한 選任上의 지나친 橫暴을 奉制하려고 美國과 같은 나라에서 採擇하고 있는 累積投票(cumulative voting)가 不可能하다. 다만 發行株式의

3%를 超過한 株式은 監査役의 選任에는 議決權을 주지 않게 된 것은 改正商法이 少數株主의 權益을 勘察한 것이라 할 수 있다(商法 第 410 條). 또한 監査役의 法定員數는 理事が 3名인 데 比하여 一人이다. 또한 理事의 任期는 2年이지만 監査는 1年으로 되어 있어 法律上 監査役을 設置한 方法趣旨에 符合되지 못할 뿐더러 監査役으로 하여금 業務를 完全히 遂行하게 할 수 없으며 따라서 會社의 内部는 勿論 監査役에 對한 社會의 信用도 두터울리 萬無한 것이다.

(2) 監査役의 任期를 이때까지의 2年에서 1年으로 改正한 것은 長期間 監査就任으로 招來된 不正防止에 意義가 있다고 하나 會計監査上 不合理한 것이다. 왜냐하면 現代企業은 規模가 擴大됨에 따라 一件의 去來가 2乃至3會計期까지 繼續되는 것으로 例를 들면 造船工業 같은 곳에서往往 볼 수 있다. 卽 監査役이 1年滿期로 途中에 退任하여는 이를 引繼한 다음 監査役이 正確하게 會計處理를 監査하려면 前會計年度에 發生된 去來까지 遷及하여 檢討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本 條件은 改正商法 409條에는 1年을 超過할 수 없다고 定해서 從前보다도 1年이 주려드렸는바 理事任期인 2年과 같은 期間이 任期로써 주어져야 할 것이다.

3. 現行監査役制度의 改善

計理士에 依한 外部監査의 適用態勢를 具備치 못한 우리로서 暫定的으로 商法上의 現行監査役制度를 前述한 바와 같은 弱體性에서 離脫시키어 法制定의 本然의 姿勢로 옮겨가게 하기 為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8個項目을 列舉할수 있다.

1) 監査役에 理事와 同等한 待遇를 할 것.

累言한바와 같이 監査役은 株式會社의 機關이며 必要하고도 常設的인 機關이다. 이 點에 있어 理事와 同一한 性質을 가지며 檢查役(inspector)과 같은 任意的機關이나 株主總會와 같은 非常設의 機關과 相異한 것이다.

그러므로 監査役과 會社와의 關係도 理事의 境遇와 同一하게 委任에 關한 規定에 따를 것으로 하고 있다. 그와같이 監査와 理事와는 法律의으로 同等한 것이며 一般에서보는 바와 같이 監査가 理事에 隸屬하는 것이 아니다. 從來 監

査役 監査實績이 低調함을 強調하여 無用之物이라 하여 廢止論까지 搞頭된은 商法自體나 監査役制度 自體의 不備보다도 會社 또는 株主가 適任者를 任命하지 못한데 緣由하고 있는 것이다.

敘上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監査役制度는 獨逸商法을 母法으로 하여 美國 英國 佛國法案보다 越等의 強力한 權限이 賦與된 監督機關이다. 卽 理事와 對等한 地位와 權能이 주어졌으나 適格者の 就任이 封鎖된 안타까운 實情이므로 監査役監査의 權限을 充分히 發揮하기 為하여서는 有能한 人物을 監査役에 選任하여야 될 것이다.

2) 監査役에 對하여 適格條件을 부칠 것.

먼저 監査役에 必要한 人格的 要素로는

(ㄱ) 公正清廉하고 監査의 觀點에서 經營上改善할 點이 있으면 充分히 所見을 말하고 責任이 旺盛한 人物.

(ㄴ) 監査에 依하여 얻은 會社의 秘密을 嚴守하는데 充分한 自信이 있는 人物.

(ㄷ) 經歷 識見에 있어 理事와 對等한 力量을 具備하고 所謂 二級人物이 아닐 것.

이와 同時に 監査로서의 職務를 充分히 完遂하려면 會計監査(auditing)에 關한 充分한 知識 經驗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는 첫째로 簿記 및 會計學 經營學 商法等에 對하여 어느程度의 基礎知識이 있으며 理解가 있고 應用을 할 수 있는 者.

둘째로 可能하면 過去 經理部長等의 經歷이 있어 會社業務全般에 關하여 살필 수 있는 者.

세째로 以上에 表示한 條件을 各 監査役에 各其 分擔할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 要는 理事が 業務를 執行하는데 必要한 專門의 知識 經驗 技能을 가져야 한다.

3) 常任監査役制度를 實施할 것.

現代企業은 그 企業規模의 急激한 發展으로 巨額의 財產을 保有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複雜한 去來의 記帳處理를 檢討할 任務를 지닌 監査役으로서 從前과 같이 決算報告書에 對한 期末監査로서 證憑書類의 細密한 檢查를 하지 않는 수가 많았는데 이와같은 矛盾을 除去하기 為하여서는 每日 出勤하여 常時監査를 行할 수 있는 常任監査役을 두어야 할 것이다.

4) 監査役中 1人은 會計監査에 關한 專門家를 選任할 것.

英國의 例를 보면 株式總會에서 監査役中 1人을 職業的 會計士(professional accountants)에서 選任하는 것이 慣例가 되고 있다. 이와같은 例를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大規模 會社에서는 監査役選任에 있어 會計監査에 經驗 있는 有能한 資格者를 選任하는 慣習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5) 監査補助員을 充實하게 둘 것.

常任監査役制度를 두고 監査専門가가 選任된다 하더라도 小數人으로는 大企業의 業務 및 會計에 關한 徹底한 監査가 不可能한 것이다. 그려므로 若干의 補助員을 採用하여 監査의 命에 따라 帳簿 書類의 照會 檢算 製表 等의 雜務를 擔當시키어 監査能率을 增進시키어야 한다. 近來 大企業에서 常任監査役 밑에 内部監査 部門을 配屬시키는 것은 보다 充實한 監査를 爲한 것이며 監査役監査의 顯著한 發展이라고 볼 수 있다.

6) 監査役의 選任方法을 改正할 것.

監事의 選任은 形式上 株主總會의 決議事項이지만 實施에 있어 大部分의 株主는 監事選任에 無關心한 傾向이 있다. 따라서 理事는 有利한 人物을 推薦함으로써 監事의 地位를 弱化시키고 로보트化 시키는 弊端이 있다. 特히 現行商法은 그 選任方法을 輕視하고 있는바 理事選任時와 같은 特別決議를 排除하고 普通決議에 依存하고 있다. 따라서 監事의 選任도 理事와 같이 發行株式의 二分之一 以上的 株主出席에 依한 特別決議事項으로 改正하여야 될 것이다.

7) 監事에는 投資擁護를 爲하여 大株主로 부터 監査에 關한 專門家를 推薦한다.

元來 監査役制度自體를 大株主가 自己의 投資를 擁護할 目的으로 投資會社의 業務를 執行할 理事を 監督하고자 選任한 것이다. 獨逸에서는 大株主가 監査役이 되고 있는 수가 많으나 大株主가 반드시 監査専門家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一般的으로 企業規模의 擴大化複雜化됨에 따라 漸次 監事専門家에 依한 監査로 推移케 되었다. 이려한바 監事는 理事에 隸屬하지 말고 充分히 그 機能을 發揮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監事는 業務의 執行機關이 아니므로 不正을 行

할 수 없으며 業務에 忠實케 할 수 있다.

8) 監査役에 對한 罰則規定을 嚴重히 할 것.

監査役은 會社에 對하여 受任者の 立場에 있으므로 그 任務를 慵慢케 한 境遇에는 制裁를 免치 못하는 것이다. 卽 商法 414條는 監事が 任務를 慵慢하였을 때에는 監事는 會社에 對하여 連帶賠償責任을 지게 되어 있다. 理事が 背任 橫領 等으로 會社에 損害를 끼치는 境遇 監事が 監查能力不足으로 이를 發見할 수 없었다거나 알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는 境遇에는 監事는 理事와 連帶하여 責任을 저야 된다.

이와 同時에 理事에 背任橫領이 없다 하더라도 故意로 또는 無能力者로 會社財產의 評價를 그릇쳐 虛實한 資產을 累積하여 結果의으로 破綻을 招來한 境遇도 亦是 責任을 免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監事が 決定期마다 株主總會에 그 事實을 報告하였다며는 理事의 改善等으로 破綻을 未然에 泄止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實地에 있어 監事에게 責任을 追窮한 例가 別로 없는 것이 監査役의 低調한 하나의 原因이 되고 있다.

4. 外部監査制度의 採擇

現在 商法上 監査役制度를 有用하게 活用하여 企業의 監査能率을 높이어야 할 것은 勿論이지만 가까운 將來에 外部監査制度까지 適用할 수 있도록 하기 爲하여 有能한 職業의인 計理士를 大量 養成하여야 될 것이다. 美國은 勿論 東南亞地域에서도 漸次 計理士에 依한 外部監査制度를 指向하고 있는데 比하여 우리나라 實情을 살펴 보면 政府樹立後 第9次에 亘한 計理士 本試験 및 詮衡試験에서 約 100餘名의 合格者를 낸데 不過하며 學界에서 協會에 登錄한 學者를 合하여 180餘名의 登錄計理士를 保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對한 社會의인 冷待와 政府當局의 微溫의in 施策으로 30餘名의 開業計理士도 業務量이 別無한 形便이다.

오래전부터 適正課稅政策上 不合理한 認定課稅의 撤廢를 부르짖고 一般投資家の 健實한 投資를 爲하여 會社財產의 참다운 公開를 要望하였음에도 不拘하고 이것이 實現되지 못하는 것

은 그만큼 우리나라의企業會計監査面을 等閑視하고 있음을 立證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會計監査面의 矛盾乃至不合理性을 除去하기 為하여 現行商法 및 稅法의 大幅의 改正과 計理士監査制度의 確立을 為한 諸般態勢를 完備하여야 될 것이다.

이를 좀더 具體的으로 言及하면 모든 企業體에 關한 會社監査業務에 外部公認計理士가 關與할 수 있도록 改正할 것이며 또한 課稅에 必要한 資料를 稅務當局에 提出할 때에도 計理士에 依한 確印이 必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行政當局에 依한 如斯한 計理士監査獎勵策에 併行하여 計理士監査制度를 適用할 수 있을 만큼 職業의 專門計理士의 養成은 勿論 監査基準을 制定하여 監査의 意義와 限界 및 效果等을 分明히 하여 企業體側의 協助와 아울러 監査에 便宜를 提供하여야 될 것이다. 이제 外部監査制度의 確立을 為하여 時急한 監査基準을 計理士協會가 主動이 되어 制定하였으며 監査實施準則도 制定中에 있어 머지않아 公布될 것이다. 監査基準의 一般的의 構成要件을 보면 다음과 같다.

監査基準은 監査實務中 慣習으로 發達한 것이며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하는 것을 要約한 것이 原則이므로 職業的 監査人은 財務諸表의 監査를 行함에 있어 法令에 依하여 强制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恒時 이를 遵守하도록 되어 있다.

監査基準은 監査一般基準 監査實施基準 및 監査報告基準의 三種으로 区分된다. 監査一般基準은 監査人の 適格性條件 監査人の 任務限界를 明白히 하는 原則이다. 監査實施基準은 監査手續의 選擇適用을 規制한 原則이며 監査報告基準은 監査報告書의 記載要件을 規律하는 原則이다. 監査實施基準은 監査手續의 選擇適用을 規制한 原則이며 監査報告基準은 監査報告書의 記載要件을 規律하는 原則이다. 이와같은 監査基準에 勘案하여야 될 事項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監査는 누구나 容易하게 行할 수 있는 簡單한 것이 아니며相當한 專門的 能力과 實務上의 經驗과를 兼備한 監査人만이 비로소 有效適切하게 이를 行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監査는

아무에게나 마음 놓고 委任할 수는 없는 것이며 高度의 人格者이며 公正한 判斷을 내릴 수 있는 立場에 있는 監査人이야만 비로소 依賴人은 그를 安心하고 委任할 수 있다. 따라서 監査人の 資格 및 條件에 對하여 基準을 設置하는 것은 監査制度의 確立 및 維持에 不可缺한 要件이다.

2) 監査를 實施함에 있어 選擇適用 되는 監査手續은 企業의 事情에 따라 相異한 것이며一律적으로 이를 規定할 수는 없는 것으로 監査人の 判斷에 맡기는 수가 많다. 그런데 監査의 能力과 經驗은 監査人の 自由에 맡기는 것은 社會의 信用을 圖謀하는데 背馳되는 것이다. 이와 同時に 監査의 實施에 關하여 公正妥當한 任務의 限界를明白히 하지 않으면 監査人の 責任을 過重케 하는 結果가 된다. 따라서 監査에 對한 信賴性을 높임과 同時に 任務範圍를 限定키 為하여 監査人の 判斷을 規制할 一定의 基準을 設置하여 이것을 遵守시키어야 한다.

3) 監査報告書는 監査結果로서 財務諸表에 對한 監査人の 意見表示의 手段인 同時に 監査인이 自己의 意見에 關한 責任을 正式으로 認定하는手段이다. 따라서 그 内容을 簡潔明瞭히 記載하여 報告함과 責任의 範圍를 明確히 限定하는 것은 利害關係人 뿐만 아니라 監査人自身의 利益을擁護하는데 重要한 것이다. 過去의 經驗에 비추워 監査人은 不當하게 責任을 限定하거나 回避하기 為하여 애매한 文句를 羅列하는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監査本來의 目的을 忘却하고 監査制度의 健全한 發展을 阻害하게 된다. 그러므로 監査報告書의 記載要件에 따라 一定의 基準을 設置하여 監査人으로 하여금 이를 嚴守시키어야만 한다.

以上과 같은 要件을 勘案한 監査基準의 制定은 되었으나 諸計定의 監査手續節次를 規定한 監査細則과 監査人の 倫理規定等을 制定하여 監査上統一性을 期하는 한편 協會中心으로 會計監査 其他 計理關係에 對한 教養講座 및 機關誌發行으로 質的向上을 圖謀하여 一般의 信賴性을 높이어야 할 것이다.

5. 結 言

以上 우리나라 企業會計監査의 實態와 이를 改

善하는 方法으로 現行監査役監査制度의 補強과 公認計理士에 依한 外部監査制度의 適用을 力説하였거니와 諸般 事惰으로 미루워 監査役監査와 計理士와를 相互調整하여 併行시키어야 한다. 이는 公益과 投資保護合理的 課稅 等을 為하여 外部監査가 必要하나 急作스러히 外部監査만을 適用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計理士制度가 發展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外部監査의 施行이 會社自體의 内部監査役監査를 스스로 排除하는 것은 아니며 도리히 會社의 會計에 關한 正否를 會社自體의 機關인 監事로 하여금 監査케 하고 그 適否를 外部監査人을 通하여 吟味하므로써 icro서 會計監査의 批判的 機能을 達成할 수 있는 長點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監査役은 株式會社의 機關으로 役員인 同時に 株主의 代表者이므로 會社內部에 있어서의 會計處理에 能通하고 있을 것이다. 더욱이 常任監査役制度에서는 監査補助員을 督勵하여 언제든지 不正虛偽의 有無를 비롯하여簿外帳簿의 有無 不正貸出 및 借入金의 有無 證憑의 僞造 및 割引料 收入의 有無 等을 언제든지 監査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任務를 懈怠히 하였을 境遇의 罰則도 法的으로 外部監査人보다 嚴하여 會社에 對한 損害賠償責任과 第三者에 對한 理事와의 連帶責任 및 總株主에 依한 同意를 얻을 責任 等으로 充분히 그들의 業務監査를 奉制할 수 있도록 制定된 商法上의 監査役監査를 活用하여야 될 것이다. 이와 同時に 外部監査體制의 適用態勢를 完備하고 大企業體서 부터 漸進의 으로 實施에 옮겨 企業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고 株主債權者와 一般關係人の 利害關係에 寄與하고 나아가서 企業信用의 增進으로 企業資本의 增加를 容易케 할 수 있어 企業의 正常의 發展을 期할 수 있도록 會計監査制度의 改善을 斷行할 것을 期待하는 마음 懇切하다.

監査基準의 國際的 普偏性과 各國의 會計監査基準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할것 없이 보다 살기 좋은福祉國家를 形成하고자 國民經濟의 눈부신 成長을 慾願하고 있다. 그러나 來日의 經濟發展은當局의 賢明한 諸產業育成策에도 依存되는바 크

나 이에 뜻지 않게 重要한 것은 企業內部에서 合理的인 運營策을 樹立하는데 必要한 企業經營計算의 公正性을 保障할 수 있는 信賴性있는 會計監査制度가 確立됨으로써 經濟發展의 土臺를 鞏固히 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企業經營計算의 公正性을 檢討하고 不合理性을 是正하는데는 監査人の 役割이 重大한 것이며 이를 監査人이면 누구나 遵守하여야 할 監査基準은 國家에 따라 程度의 差異는 있을지언정共通된 理念 밑에 制定되었는바 監査基準의 普遍性으로서 勘案된 諸要素와 韓國을 비롯한 美國과 日本의 監査基準을 보면 다음과 같다.

會計監査基準의 國際的普遍性

보다合理化된 監査制度는 그 制度의 運營을 擔當하는 職業의인 監査人이 實務上 遵守하여야 할 監査基準을 무엇보다도 앞서 把握하여야 할 것인바 一般基準을 為始하여 實施基準과 報告基準으로構成되는 會計監査基準의 内包하여야 할 諸要素를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1) 監査의 一般基準(General standards)

大體로 監査의 一般基準은 五個項目으로構成되는바 여기서는 監査人の 資格條件 職業的倫理 및 監査의 一般的인 意義와 責任의 限界를 規定한다.

(1) 監査人の 資格條件

① 監査는 監査人으로써 適切한 技術的 訓練과 實務經驗을 具備한 者로서 當該企業에 特別한 利害關係가 없는 者에 依하여 行해져야 한다.

第1條項은 監査人の 資格과 條件에 關한 規定이다.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財務諸表監査는 公認計理士와 같은 職業의 專門家이면 누구나 關係 없는 것이 아니다. 即 會計學 및 監査等에 關하여 專門的 能力乃至 知識을 갖을것이며 依賴人에 利害關係가 없어야 한다. 이와 同時に 實務上의 經驗도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2) 公正不偏의 原則

② 監査人은 委託된 監査事項에 關하여 諸般事實의 認定 處理의 判斷 및 意見表明에 있어 恒時公正不偏의 態度를 堅持하여야 된다.

本條項은公正不偏한 態度로써 監査하여야 되

며 그렇게 하므로서 依賴人과 外部關係者에게
信賴를 받을 수 있다. 이 원칙은 職業的監查人
이 嚴守하여야 될 가장 重要한 職業的倫理의
하나이다.

(3) 專門家로서의 當然한 注意

③ 監查人은 監查의 實施 및 報告書作成에
對하여 職業的 專門家로서의 正當한 注意를 하
여야 된다.

本條項은 所謂 Due Professional Care 를 規定한
것이다. 이것은 職業的 專門家로서의 當然히 가져
야 될 注意이다.

(4) 秘密의 保持

④ 監查人은 業務上 知得한 事項을 正當한 理
由 없이 他에 漏洩하거나 盜用하지 못한다.

本條項은 秘密保持의 規定이다. 이것은 이미
計理士法 第 10 條에 規定되고 있는 것이지만 秘
密保持의 點에서 가장 重要한 監查調査書(Audit
Working Papers)의 取扱을 規定하는 것이 本條의
目的이다.

(5) 監查證明의 意義 및 責任의 限界

⑤ 監查人이 行하는 監查證明은 財務諸表의 適
否에 關한 意見의 表明에 그치므로 客觀的 事實
의 說明이나 財務諸表의 作成에 關하여 責任을
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監查人이 行하는 證明이라는 意義를
明白히 하는 것이다. 近代的 企業의 財務諸表는
記錄과 慣習 및 判斷의 綜合的 表現이며 있는 대
로의 事實을 單純히 反映시킨 것에 不過하므로
財務諸表에 對하여 證明한다는 것은 財務諸表의
內容을 證明하는데 있는 것이다.

또한 監查人은 監查報告書에 記載된 財務諸表
에 對한 責任을 當該企業의 經營者가 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財務諸表는 經營者的 財務諸
表이지 監查人的 財務諸表는 아니기 때문이다.

2) 監查實施基準(Standards of Field Work)

(1) 監查의 計劃性과 補助者業務에 關한 責任

① 監查人은 事前에 監查計劃을 作成하고 그
에 따라 秩序整然한 監查를 實施할 것은勿論
補助者를 使用하는 境遇에는 그들의 業務를 徹
底히 監督하여야 된다.

이는 監查執行의 計劃性 乃至 指導性과 아울
러 補助者使用에 對한 責任問題를 規定한 것이

다. 即 監查人은 監查計劃書(Audit Program)를
作成하여 監查手續의 選定 適用範圍 適用方法
所要日數의 決定을 行하고 日別事務分擔을 詳細
하게 計劃할 것이며 그에 따라 監查를 實施하여
야 된다. 監查計劃의 決定에 있어 考慮되어야
할 要件은 여려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問
題가 되는 것은 適時性(Timeliness)과 秩序性
(Orderliness)에 있다.

한편 計理士가 雜務 其他 處理 및 本 監查에
있어 補助人을 使用하는 境遇에는 補助人이 行
한 業務에 關하여는 直接 計理士 本人의 遂行한
것과 다름 없이 外部에서 認定하게 되므로 그로
부터 發生하는 모든 責任問題는 모두 計理士가
負擔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2) 内部統制의 信賴性

② 監查人은 監查手續의 適用範圍를 決定하기
爲하여 内部統制의 制度 및 그 適用狀態를 調査
하여 그 信賴性의 程度를 制定하여야 된다.

이것은 監查手續의 適用範圍를 決定하는 基準
으로서 内部統制의 信賴性을 指定함과 同時に
信賴할 수 있는 程度를 含味할 必要性을 規定한
것이다.前述한 選擇基準에 依하여 手續을 選定
한 後 이를 適用함에 있어 監查人은 그 實施의
範圍를 定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證據의 質에
對하여 證據의 量을 決定하는 것이다. 適用의
範圍는 會社의 内部統制의 効果의 程度에 依하
여 이것을 定할 수 있다. 그런데 内部統制(Internal Control)는 内部牽制(Internal Check)와 内部
監査(Internal Audit)를 包括하는 것이며 그 組織
이 整備되고 有効하게 運用되는 境遇는 適用範
圍을 適當히 縮小시킬 수 있다. 이에 反하여 内部統制가 그자리 信賴할 수 없을 때는 그 程度
에 따라 適用의範圍를 擴張하여야 된다.

(3) 證據의 合理性

③ 監查人은 財務諸表에 關한 意見表示에 合理
의인 證據를 提供하기 为了必要한 限度內에
서 證據物件을 實查 帳簿照會 計算照會 監査立
會 確認 또는 質問等 그外의 事情에 따라 使用
할 수 있는 모든 監查手續을 選擇 適用하여야
한다.

이것은 合理的證據(Reasonable Evidence)의 原
則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會計報告의 信賴

性을 높이기 위하여 監查人은 根據 없는 意見을 表明하지 말고 自己의 意見을 支持하는데 充分한 根據를 求하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 監查人의 任務는 正當한 注意로써 自己의 意見을 保證하는데 充分한 證據를 가져야 한다.

(4) 監查의 經濟性

④ 監查手續適用의 範圍 方法 및 日數는 監查의 效果와 犠牲과를 比較評量하여 依賴人에게 過重한 負擔이 되지 않도록 合理的으로 이를 決定하여야 된다.

이것은 監查手續의 適用方法을 決定하는 要件으로 經濟性의 原則를 規定한 것이다. 選擇된 監查手續을 適用하는 境遇 그 具體的 方法의 選定 適用의 範圍 및 日數의 決定과 經費 其他 依賴人의 犠牲을 考慮하여 이것을 決定할 必要가 있다. 監查의 效果에 比하여 過大한 犠牲을 依賴人에 미치는 것은 極力 回避하여야 된다. 監查의 效果는 그 費用을 補償하고 남음이 있어야 한다. 費用을 無視하여 精細한 監查를 行하며는 行할 수록 正確한 結果에 接近할 수 있는 하나 이는 어느程度 制限을 받게 되는 것이다.

(5) 會計處理의妥當性과繼續性

⑤ 監查人은 企業이 採用하는 會計處理의 原則 및 手續을 檢閱하여 그것이 企業會計 原則과 財務諸表規則에 準據하고 있는가의 與否를 確認하여야 된다.

이것은 會計處理의妥當性과繼續性의 含味에 關한 必要性을 規定한 것이다. 따라서 近代的 監查의 가장 새로운 特徵을 이루는 部分이다. 英國의 古代精密監查에 있어서도 原則上의 誤謬(Error in principle)는 하나의 監查目標이었다. 記錄과 記錄과의 照合을 特徵으로 하는 精密監查는 内部牽制組織의 進步에 依하여 그意義를 減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企業의 會計處理는 大部分 會計原則과 財務諸表準則에 違背된 處理를 하고 있으므로 이點 特히 留意하여 監查하여야 될 것이다.

3) 監查報告基準(Standards of Reporting)

(1) 監查報告書의 内容

① 財務諸表에 添附하여 外部에 發表하는 監查報告書에는 監查人이 實施한 監查의 概要와企

業의 會計處理 및 財務諸表에 關한 意見을 簡潔明瞭하게 記載하여야 함은勿論 左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 監查人이 實施한 監查의 手續 및 範圍의概要

ⓑ 監查基準에 準據하여 監查가 行하여졌는가.

ⓒ 正規의 監查手續 및 그때의 事情에 비추워必要하다고 認定한 監查手續이 實施되었는가 與否 財務諸表의 重要한 項目에 對하여 正規의 監查手續이 實施可能하고 省略된 境遇는 그 理由

ⓓ 企業의 會計處理 및 財務諸表에 關한 意見에 對하여서는 左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 企業이 採用하는 會計處理의 原則 및 手續이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規則에 準據하고 있는가 없는가 財務諸表의 重要한 項目이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에 準據하지 않고 處理되었을 때에는 그 趨旨와 그에 關한 意見

ⓑ 企業이 採用하는 會計處理의 原則 및 手續이 當年度에도 繼續하여 適用되어 있는가의 與否 前項의 原則 및 手續에 對하여 重要한 變更이 行해진 境遇에는 그 趨旨及 그에 對한 意見

ⓒ 企業의 財政狀態 및 經營成績에 關한 財務諸表의 表示에 對한 意見

監查報告書에는 長文式(Long Form)의 報告書와 短文式(Short Form)의 報告書가 있다. 長文式의 報告書에는 依賴人인 經營者에 提出되는 것이며 實施된 監查手續이 相當히 精細한 記述로 되어 있어 財務諸表分析 經營成績 財政狀態에 對한 批判 會計組織 内部統制組織에 對한 忠告等을 記載한 것으로 經營者에 對한 參考資料가 된다. 短文式의 報告書는 極히 簡素한 内容의 것으로 이것이 財務諸表에 添附되어 一般에게 公表되는 것이다.

(2) 免責條件

③ 監查의 實施 또는 監查人の 意見에 關하여 監查人の 責任을 限定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그 事項을 監查報告書에 明瞭하게 記載하고 補助的 說明事項과 明確히 區別하여야 한다. 監查報告書에 監查人이 責任을 限定하는 事項을 記載하는 것에 依하여 財務諸表에 關한 監查人の 意見이 無意味하게 되는 境遇에는 監查의概要를 記載하는데 그치며 意見의 表明을 省略하여야

한다.

이것은 免責事項에 關한 規定이다. 補助的 說明과 區分할 것이며 意見이 否定의in 境遇에도 이를 記載하는 代身 意見의 表明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即 免責條件이 너무 많게 되거나 重要한 事項에 對하여 說明을 부친 結果 財務諸表가 適正하다고는 할 수 없는 境遇 不適正하다고 하는 代身 意見을 陳述해서는 않된다.

(3) 補助的說明

④ 財務諸表에 記載되지 않은 重要한 事項으로 이것을 省略하는 境遇 誤解를 招來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것에 對하여서는 監查報告書에 이것을 註書하여야 된다.

이것은 補助的 說明을 規定한 것이다. 補助的 說明으로 記載할 事項은 여려가지 있으나 그 一例를 들면는 監查年度 經過後에 發生한 財政上의 重大한 變化 같은 것이다. 假令 監查完了前에 依賴人의 工場一部가 火災로 燒失된 境遇에는 監查年度의 財務諸表에는 關係 없는 일이지만 監查人은 이것을 報告書에 記載하여야 된다. 如斯한 事實을 外部의 利害關係者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監查人の 任務의 慵慢이라 말할 수 있다.

韓國의 會計監查基準 (1960年 4月 1日 公表)

第1. 一般基準

(1) 監査는 監查人으로서의 適當한 專門的 能力과 實務經驗을 具備하고 當該企業에 對하여 特別한 利害關係가 없는 者에 依하여 行하여져야 한다.

(2) 監查人은 監查職務에 關聯되는 모든 事項에 對하여 恒常 不羈獨立性과 公正不偏의 態度를 堅持하여야 한다.

(3) 監查人은 監查의 實施 및 報告書 作成에 있어서 職業的 專門家로서의 正當한 注意를 가지고 職務上의 義務와 責任을 다 하여야 한다.

(4) 監查人은 正當한 理由 없이 職務上 知得한 事項을 漏洩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안된다. 監查調查는 慎重한 注意로서 整理하여相當期間 이를 保存하여야 한다.

(5) 監查人이 行하는 監查證明은 財務諸表의 適否에 關한 意見表明에 限하는 것이며 客觀的

事實이나 財務諸表의 作成에 關하여 責任을 지는 것은 아니다.

第2. 實施基準

(1) 監査人은 事前에 監查計劃을 作成하고 그에 따라 秩序整然하게 監査를 實施하여야 하며 補助者가 있음 境遇에는 이를 徹底히 監督하여야 한다.

(2) 監査人이 監查節次의 適用 範圍 方法 및 日數를 決定하는데 있어서는 企業의 内部統制組織과 그 運用狀態를 考慮하고 効果와 犠牲을 比較評量하여 委嘱者에게 過重한 負擔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監査人은 監査를 項目的 重要性과 誤謬發生의 危險程度를 參酌하여 그때 事情에 따라 適當한 監查節次를 選擇 適用하여 監査結果의 意見表明에 對하여 立證이 該當한 合理的 證據를 確認하여야 한다.

(4) 監査人은 企業이 採擇하고 있는 會計가 企業會計原則 및 財務諸表規則에 準據되어 있고 또 前年度에 繼續하여 適用되고 있는가를 確認하여야 한다.

(5) 企業이 獨立의in 經理規定 또는 準則을 設定하고 있으며 監査人이 企業會計原則에 비추워 普遍妥當性이 있다고 認定할 수 있는 境遇에는 企業의 會計處理 및 財務諸表作成이 同規程 및 準則에 準據되어 있는가를 檢討하여야 한다.

第3. 報告基準

(1) 監査報告書에는 監査人이 實施한 監査의 概要 會計의 處理 및 財務諸表에 對한 意見을 簡潔明瞭하게 記載하여야 한다.

(2) 監査人の 意見表明에는 財務諸表가 企業의 財政狀態 및 經營成果를 適正히 表示하고 있는가의 舉否를 指摘하여야 한다.

(3) 監査報告書에는 企業會計原則 및 財務諸表規則의 準據與否와 前年度와 關聯하여 繼續的으로 適用되어 있는가의 舉否를 表示하여야 한다.

(4) 財務諸表에 記載되지 않은 事項일지라도 次期以後에 企業의 財政狀態 및 經營成果에 重大한 影響이 미칠 可能성이 있다고 認定될 境遇에는 이를 監査報告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5) 監査人の 意見表明에 있어서 限定事項이

있을 境遇에는 그 要旨를 監查報告書에 記載할
것이며 財務諸表에 表示된 項目中 監查報告書에
指摘한 事項이 없는 것은 安當한 것으로 看做
한다.

美國會計士協會의 監查基準 (1947年 10月 公表)

1. 一般基準

(1) 監查는 監查人으로서 適當한 技術的 訓
練과 經驗을 갖는 者에 依하여 行해져야만 한다.

(2) 委託된 모든 事項에 關하여 監查人은 公
正不偏의 態度를 保持하여야 된다.

(3) 監查의 實施 및 報告書作成에 있어 監查
人은 職業의 專門家로서의 正當한 注意를 하여
야 된다.

2. 實施基準

(1) 監查人은 事前に 適當한 監查計劃을 세
우고 補助者를 使用하는 境遇에는 適當히 이를
監督하여야 된다.

(2) 監查人은 内部統制을 信賴하고 監查手續
을 限定할 試查의 範圍를 決定하기 為하여 内部
統制의 現狀을 適當히 調査함과 同時に 그 良否
를 判定하여야 된다.

(2) 財務諸表에 關한 意見에 關하여 合理的
인 根據를 주기에 充分한 證據物件을 實査 立會
質問 및 確認에 依하여 求하여야 된다.

三 報告基準

(1) 監查報告書는 財務諸表가 一般的으로 認
定된 會計原則에 準據하여 作成되고 있는가의
與否를 記載하여야 한다.

(2) 監查報告書는 그 原則이 當年度에도 前
年度와 같이 繼續하여 遵守되고 있는가의 與否
를 記載하여야 한다.

(3) 監查報告書에 別段의 記載가 有する 財
務諸表가 表示하는 內容은 合理的이며 適當한
것으로 看做할 수 있다.

(4) 監查報告書는 財務諸表全體에 關한 意見
을 表明하고 또한 意見을 表明할 수 有する 趣旨
를 記載하여야 한다. 全般的 意見의 表示가 不
可能한 境遇에는 그 理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監查人 名義의 監查報告書는 監查人이 行한 監
查의 性質에 關한 明瞭한 指示 및 監查人の 責
任의 程度를 記載하여야 된다.

日本의 會計監查基準 (1950年 8月 公表)

1. 監查一般基準

(1) 企業이 發表하는 財務諸表의 監査는 監
查人으로 適當한 專門的 能力과 實務經驗을 갖
고 當該企業에 對하여 特別한 利害關係가 有する
者에 依하여 行해져야 한다.

(2) 監查人은 事實의 認定 處理의 判斷 및 意
見의 表明을 하는데 있어 恒時 公正不偏의 態度
를 保持하여야 된다.

(3) 監查人은 監査의 實施 및 報告書의 作成
에 對하여서는 職業의 專門家로서의 正當한 注
意를 가지고 行하여야 한다.

(4) 監查人은 業務上 知得한 事項을 正當한
理由 없이 他에게 漏洩하거나 盜用하지 못한다.

監查調書는 慎重한 注意를 가지고 整理하고
相當한 期間 그 것을 保存하여야 된다. 前項의
書類는 依頼人이 許可 없이 그 全部 또는 一部
를 他人에 表示해서는 不된다.

(5) 監查人이 行하는 監査說明은 客觀的 事
實의 說明이 아니라 財務諸表의 適否에 關한 意
見의 表明이다.

(6) 監查人은 財務諸表에 對한 意見에 關하여
責任을 지는 것이며 財務諸表의 作成에 關하여
責任을 지는 것은 아니다.

(7) 監查人은 監査의 實務에 있어 會計上의
不正過失의 發見에 努力하여 重大한 虛偽 錯誤
또는 脫漏해서는 안되지만 그 監査證明의 不正
過失의 事實이 全無함을 保證하는 것은 아니다.

2. 監查實施基準

(1) 監查人은 미리 監査計畫을 作成하여 이
에 따라 時期를 喪失하지 말고 秩序整然한 監査
를 實施하여야 된다.

(2) 監查人은 財務諸表에 關한 意見을 表明
하기 為하여 必要한 限度內에서 證憑照會 帳簿
照會 計算照會 監査 立會 確認 또는 質問等 그
때의 事情에 따라 使用할 수 있는 監査手續을
選擇適用하여 그 意見을 保證하는데 充分한 合
理의 證據를 確認하여야 된다.

(3) 監査手續의 選擇은 監査할 項目的 重要
性 또는 誤謬發生의 危險程度를 考慮하여 이를
決定하여야 된다.

(4) 監查人은 監查手續의 適用範圍를 決定하기 為하여 企內部統制의 制度 및 그 運營狀態를 調査하여 그 信賴性의 程度를 判定하여야 된다.

(5) 監查手續適用의 範圍 方法 및 日數는 監查의 效果와 應性을 比較評量하여 合理的으로 之를 決定하여야 된다.

(6) 監查人은 企業이 採用하는 會計處理의 原則 및 手續을 檢閱하여 그것이 企業會計原則에 離據하고 있는가의 與否를 確認하여야 된다.

(2) 財務諸表의 記載樣式 및 記載事項에 關하여 特히 準則이 設定된 境遇에는 監查人은 企業의 財務諸表가 그것에 準據하여 作成하고 有る가 없는가를 確認하여야 한다.

3. 監查報告基準

(1) 財務諸表에 添附하여 外部에 發表하는 監查報告書에는 監查人이 實施한 監查의 概要와 企業의 會計處理 및 財務諸表에 關한 意見을 簡潔明瞭히 記載하는 것으로 한다.

(2) 監查의 概要에 對하여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된다.

① 監查人이 實施한 監查의 手續 및 範圍의 概要.

② 監查基準에 準據하여 監查가 行하여졌는가는가.

③ 正規의 監查手續 및 그때의 事情에 비추워 必要하다고 認定한 監查手續이 實施되었는가 與 財務諸表의 重要한 項目에 對하여 正規의 監查手續이 實施可能하고 合理的인 데도 不拘하고 省略된 境遇는 그 理由.

(3) 企業의 會計處理 및 財務諸表에 關한 意見에 對하여서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된다.

① 企業이 採用하는 會計處理의 原則 및 手續이 企業會計原則에 準據하고 있는가 없는가 財務諸表의 重要한 項目이 企業會計原則에 準據하지 않고 處理되어 있을 때에는 그 趣旨와 그에 關한 意見.

② 企業이 採用하는 會計處理의 原則 및 手續이 當年度에는 繼續하여 適用되고 있는가의 與否 前項의 原則 및 手續에 對하여 重要한 變更이 行해진 境遇에는 그 趣旨 及 그에 關한 意見.

③ 企業의 財政狀態 및 經營成績에 關한 財務諸表의 表示에 對한 意見.

(4) 財務諸表에 記載되지 않은 重要한 事項으로 이것을 省略하는 境遇誤解를 招來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것에 對하여서는 監查報告書에 이것을 補足하여 記載하여야 한다.

(5) 監查의 實施 또는 監查人の 意見에 關하여 監查人の 責任을 限定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그 事項을 監事報告書에 明瞭하게 記載하고 補助的 說明事項과 明確히 區別하여야 된다. 監查報告書에 監查人이 責任을 限定하는 事項을 記載하는 것에 依하여 財務諸表에 關한 監查人の 意見이 無意義하게 되는 境遇에는 監查의 概要 를 記載하는데 그치며 意見의 表明을 省略하여야 한다.

(筆者 韓國產業銀行 企業分析部)